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1년 2월 25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2월 2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9) 상정
- 제169회 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(2011. 3. 9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과장 윤 인 상)

□ 제안이유

- 소송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어 예산운영의 효율성 및 소송수행 난이도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의 형평성을 유지하고,
-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송의 장기화로 인하여 소송수행 에 소홀함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며, 소송수행 유공자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다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포상금 지급대상 중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70 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포함하도록 함(안 제2조제1항제2호).
- 나. 소송사건 종결시에 지급하던 포상금을 각 심급별로 지급하도록 변경

함(안 제4조).

다. 소송내용이 단순한 사건은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고, 사건 당 50만원으로 규정한 지급액을 30만원으로 변경하며, 가처분신청사건 및 소액사건 지급액을 10만원으로 하여 지급액을 세분화함(안 제5조).

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속기록 참고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특이사항 없음	○ 특이사항 없음

- 4. 토론요지
 - 가. 찬성토론
 - 없 음
 - 나. 반대토론
 - 없 음
- 5. 심사결과
 - 원안의결
- 6. 소수의견
 - 없 음
- 7. 기타 필요한 사항
 - 없 음

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"부천시장(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"을 "부천시장 (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"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소송수행자"를 "소송수행자(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)"로 하고, 단서 중 "경우에 한다"를 "경우로 한정한다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원고청구의 전부를"을 "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당해사건"을 "해당 소송사건"으로 한다. 제3조 중 "제5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5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심급별로 결정한다. 다만,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(對比)하여 결정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액)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준비서면(답변서를 포함한다) 등의 제출과 변론수행의 횟수를 합하여 3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한다.

- 1. 행정소송(본안): 1사건 당 30만원 이내
- 2. 민사소송(본안): 1사건 당 30만원 이내
- 3. 가처분신청사건(본안소송에 부수하는 사건은 제외한다)과 「소액사건 심판법」에 따른 소액사건: 1사건 당 10만원 이내
-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제6조를 제7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6조(포상금 지급신청) 제2조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서식의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소송총괄부 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종전의 제6조) 중 "의하여"를 "따라"로 하고, "자중"을 "공무원 중"으로 하며, "자는"을 "사람은"으로 하고, "한다"를 "할 수 있다"로 한다.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조례 시행 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.

"별지"

[별지 서식]

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신청서								
사 건 번 호			入) 건 명				
원 고 (신청인)			I	피 고 신청인)				
소송주관부서				송수행자 내리인)				
사 건 개 요								
소 송 수 행 내 용	(일자별로 답변서 등 제출, 변론참석 내용을 기재)							
판 결 일 자	확			정 일 자				
판 결 내 용								
신 청 내 역	성 명	9	은행명		계좌번호			
「부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」제6조에 따라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								
을 신청합니다.		Ļ	<u>년</u> 월	일				
	주 주	청인 : 직	급	성명	(서명	또는 인)		
	직급			성명		또는 인)		
	추	·천인 : 직	위	성명	(서명	또는 인)		
부천시장	귀하							